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15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2.3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 구체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제1항, 제2항)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 지원 제외업종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

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취소 기준 삭제(안 제8조제3항)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의 선정 취소 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4553, Fax : 042-472-342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01
	임업	02
	어업	03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 자동차 제외	47
	(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업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u>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자</u>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② (생략)</p> <p>③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u>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를 도용(盜用)하여 선정된 경우</u></p> <p>2. <u>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u></p>	<p>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 _____ _____ _____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_____</p> <p>_____.</p> <p>② <u>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u>_____</p> <p>_____ _____ _____.</p> <p>제8조(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업화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화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이 사업화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의 세부 사항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 제3항까지 —————

—————
—————
—————
—————
—————
—————